특집

고 도태우와 숫송아지 값에 의존 목장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종축을 개량하고 사양관리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목장은 우유 생산이 연평균 두당 1만 kg를 웃도는 목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업 규모 (성우 40~50두)에 두당 연평균 8천 kg이상이면 낙농선진국 수준이다.

이정도의 전업농과 산유량이면 시유로 경쟁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지금과 같은 전국 두당 연평균 5,700kg 생산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목장주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 것들이다. 목장주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가능한 분야가 조사료(초지, 사료작물) 생산이다.

몇몇 기업목장을 제외한 많은 목장들이 조사료 포의 부족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많은 수의 목장들이 우사와 운동장만 있고 조사료포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경지 면적이 적은 국가적 현실에 목장이 밀집한 경기 수도권 지역은 높은 토지 가격으로 확보가 힘들다. 이 분야는 목장주도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식량산업 차원에서 쌀전업농처럼 사료 작물포나 초지 확보에 자금과 국유림 임대등 전폭적인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

세계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일기 시작하고 무기화 되어가는 현실에 낙농업이야말로 제일 좋은 식량 확보 산업이다. 젖소는 사람이 직접 이용 못하는 풀과 농업부산물(조사료)를 먹고 영양분이 풍부한 우유와 고기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신비의 동물이다. 환경도 보존하고 식량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으로 이 강산을 옥토로 만들수 있는 것도 낙농산업이다. 소에서 나오는 분뇨를 사료 작물포에 환원하면 그야말로 자연적인 순환의 법칙이며 국토를 옥토로 만들수 있다.

전업낙농업 규모(성우 40~50두)의 두수에 조사료 포만 확보되고 종축 개량과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하면 농후 사료를 수입하여 먹인다 해도 국내 시유면에서는 경쟁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많은 수의 목장주들이 몇년만 더 하고 목장을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경영하면 그 목장은 망가질 수 밖에 없고 생산성과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몇년만 더하고 그만둘 직업이라면 지금 당장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일 것이다. 평생직업 또는 그이상 대를 이어 낙농업을 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 연구하여 어려운 낙농업의 현실에 도전하자.

국제적 경쟁에서 선진국 낙농가와 대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실을 꼭지점으로 궤도를 수정, 그들보다 몇배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히 뒤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 낙농가와 같은 노력으로는 계속 그들의 뒤를 따라 갈 뿐이다. 우리 낙농가도 낙농업이야말로 환경산업이며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배가의 노력으로 새로운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에서 앞설수 있도록 노력하자.

신 민 수
전남도지회장

우리나라 낙농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자

낙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낙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낙농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낙농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낙농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낙농가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967년 낙농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30년만에 마침내 개정되었다.

강산이 세번 변한 세월이였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16년만의 일이다.

생산자 단체간의 갈등으로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늦게나마 박수를 보낸다.

법의 통과로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등 큰 골격은 갖추어 졌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어떻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낙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우리나라 낙농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낙농 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낙농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낙농가의 권익이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튼튼한 기반으로 국제적 시장 개방 압력에 대처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낙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서 큰 문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 하고자 한다.

첫째, 부칙 제2조 1항(설립위원)

설립위원은 큰 골격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질지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설립위원 7명중 4명은 낙농가, 낙농관련 생산자단체, 낙농육우협회, 축협에서 선출 되어야 한다.

둘째, 제5조(낙농 진흥회의 설립 및 구성)

진흥회의 원칙은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운영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1/3의 범위내에서 관련단체를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가. 기능 및 기구는 최소화 해야 한다.

나. 구성은 낙농가, 낙협, 축협, 낙농육우협회등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10명 낙농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유업체, 유가공업체, 연구기관 각 1명, 회장 1명으로 해야한다.

다. 회장은 낙농가 유가공업체, 소비자의 이해 관계를 조정 할 수 있고 추진력이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갖춘자로서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회장,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

셋째, 제6조(낙농진흥회의 업무)

가. 계획 생산체제 확립 : 농가별, 집유 조합별, 쿼터량을 결정시 전업농 및 소규모 농가의 보호를 위하여 1일 생산량 10,000kg까지는 생산제한 조치를 하면 안된다.

나. 수입자유화에 의한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생산 원유가 남아돌 경우에는 수입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쿼터량을 초과 했을때도 초과한 쿼터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제13조(집유조합지정)

가. 집유조합의 지정은 낙협으로 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 축협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집유 일원화의 취지를 살려 집유조합 및 집유권역의 설정은 광역화해서 시·도에 각2개 정도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제14조(원유검사)

가. 원유의 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꼭 해야 한다.

나. 원유검사 및 유대정산시 유지방 무지유고형분도 함께 해야 한다.

맺는말

수입은 개방화 되어 가는데 우리나라 낙농현실은 어떠한가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낙농 구조 개선은 다 되어 있는가.

자꾸만 올라가는 사료값에 조사료 기반은 만들어 졌는가. 정말 지금 이 상태로 낙농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제 낙진법이 개정 됐으므로 그 동안 이해관계를 달리 했던 낙농단체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시 아래의 조항은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가 편에서서 만들어 져야 한다.

1. 제 2조 낙농진흥계획 수립
2. 제4조 낙농지구
3. 제5조 2항 낙농관련 단체의 범위
4. 제6조 진흥회의 업무
5. 제9조 원유의 계약 생산
6. 제12조 원유의 계약 공급
7. 제13조 집유조합 지정
8. 제18조 원유등의 수급계획
9. 부칙 제2조 진흥회의 설립준비.